경기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 (공시송달) 공고 제2026-99호

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신청취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

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신청취소 사전 처분 대상자에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 등을 등기 발송하셨으나,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.

2026. 11. 19.

경기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장 경기지방고용노동청평택지청장인

1. 건　명 :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신청취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
2. 근　거 :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, 제12조, 행정절차법 제21조(처분의 사전통지) 및 행정절차법 제14조
3.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

성 명	생년월일	서류의 명칭	서류의 주요내용			송달불능 사유	주소
			예정된 처분의 제목	처분 사유	처분하고자 하는 내용		
문0준	95.07.11.	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신청취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	수급자격 신청 직권 취소 처분	필수 초기대면 상담일자에 미방문 (출석통지 2회이상불응)	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신청취소처분	연락두절 폐문부재	경기도 평택시 신한3길 50(비전동) (이하 생략)

4. 공고기간 : 2026. 11. 19. ~ 2026. 12. 3.(15일간)
5. 기타사항은 경기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 평택고용센터 김예은(031-646-1235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